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(제2장 7.1.1 관련)

1. 정의

-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가. "철도비상사대"란 열차충돌, 탈선, 화재, 폭발, 자연재해 및 테러, 열차 및 역사 혼잡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 또는 위험개소(터널·교량 등) 내 장시간 열차가 정차하는 상황을 말한다. 이 경우 열차 및 역사 혼잡도는 별표1 제10호 마톡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가 '심각'이어야 한다.
- 나. "비상대응"이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열차의 조속한 정상운행과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다. "비상대응 시나리오"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철도비 상사태의 유형별로 비상상황 발생 시점부터 복구완료 및 열차 정상운행이 될 때까 지 비상대응인력이 조치할 행동요령을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한 것을 말한다.
- 라. "비상대응 유관기관(이하 "유관기관"이라 한다)"이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(이하 "철도운영자등"이라 한다)의 비상대응 활동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, 경찰서, 응급의료기관 및 협력업체 등을 말한다.
- 마. "표준운영절차"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 의 기능과 역할을 유형화한 절차 또는 비상대응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절차를 말한다.
- 바. "현장조치매뉴얼"이란 표준운영절차를 바탕으로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절차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.
- 사. "긴급구조"란 자연재해 또는 철도비상사태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때에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인명구조, 응급처치 및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.
- 아. "비상대응 연습·훈련"이란 철도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·훈련을 말하며, 종합연습·훈련과 부분연습·훈련으로 구분한다.
- 자. "종합연습·훈련"이란 특정 유형의 비상대응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 시하는 종합적인 가상의 현장 연습·훈련을 말한다.
- 차. "부분연습·훈련"이란 비상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가상의 현

장 연습・훈련을 말한다.

카. "철도 사이버테러"란 해킹·바이러스 등 전자적 수단으로 철도운행제어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철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유출, 위조, 변조, 훼손, 파괴하는 등 철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
2. 비상대응계획 수립

- 가.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 절차,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체계,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등을 위한 문서화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.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.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)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(목적, 적용범위, 기본방침, 수립절차 등)
 - 2)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작성
 - 3)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
 - 4) 비상대응 연습·훈련 절차 및 방법
 - 5) 비상대응 사이버테러 대책
 - 6) 비상대응계획 수정 · 보완에 관한 이력사항 등
- 나. 철도운영자등은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, 역, 터널, 교량 등의 사고 위치별 및 여객열차, 화물열차, 위험물 운송열차, 건물 등의 사고 대상별로 비상대 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야 한다.

3. 표준운영절차 수립

철도운영자등은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, 표준운영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가.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절차
- 나. 비상대응절차도(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절차 포함)
- 다.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담당업무별 역할과 책임(유관기관 포함)
- 라. 철도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체계(분야별 포함)
- 마. 승객 긴급 신고요령 안내
- 바. 승객 긴급 대피요령 안내
- 사. 승객 긴급 구조체계
- 아. 화재발생에 따른 연기확산 억제 및 배연 대책
- 자. 비상대응 통신망 및 안내방송체계
- 차.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(유관기관 포함)

4.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

가.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

하다

- 1)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(도시철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포함)
- 2) 지휘 및 보고 체계
 - 가) 철도비상사태 유형별 지휘 및 보고 체계(유관기관 포함)
 - 나)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(상시 연락가능 무전 주파수와 호출번호)
- 3) 화재, 테러 등에 대비한 긴급방재대책
- 4) 현장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대책
- 5) 비상대응지도 구축
- 나.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 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) 유관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수립방안
 - 2)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
 - 3) 비상대응 투입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능력
 - 4) 유관기관별 관련 문서의 변경, 개정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등

5. 비상대응 연습·훈련 계획 수립

철도운영자등은 매년 비상대응 연습·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비상대응 연습·훈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가. 비상대응 연습·훈련의 목표
- 나. 비상대응 연습·훈련의 시기, 방법, 규모 및 장소
- 다. 연습·훈련 내용에 적절한 비상대응 시나리오
- 라. 비상대응 연습·훈련의 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
- 마. 비상대응 연습 · 훈련의 평가 방법
- 바. 비상대응 연습·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등

6. 비상대응 연습·훈련 시나리오 선정

철도운영자등은 다음 절차에 따라 비상대응 연습·훈련 시나리오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가. 연습・훈련 대비 철도비상사태의 유형 선정
- 나. 비상대응 연습・훈련 시나리오의 작성
- 다.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비상대응 연습·훈련 절차 작성
- 라. 비상대응 연습・훈련 지휘체계 구성
- 마.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 대책 수립
- 바.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성
- 사.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(유관기관 포함) 구성

7. 비상대응 연습・훈련 시행

철도운영자등은 다음과 같은 비상대응 연습·훈련을 시행하고, 연습·훈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가. 종합연습·훈련: 유관기관과 함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 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대비 연습·훈련이 3. 표준운영절차 수립에 따른 철도비상사태 유형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종합연습·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.
- 나. 부분연습·훈련 : 관제, 승무, 역무, 차량, 시설, 전기 등 분야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.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) 철도비상사태의 해당 유형별(열차충돌, 탈선, 화재, 폭발, 자연재해, 테러, 열차 및 역사혼잡도, 위험개소 내 장시간 열차 정차) 부분연습·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(이 경우 2개 이상의 복합유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유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). 다만 열차 및 역사 혼잡도의 유형별 부분연습·훈련은 관련분야만 한다.
 - 2)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(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)의 해당 유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)
 - 3) 모든 해당 업무 종사자가 2)의 후련에 매년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할 것

8. 비상대응 연습・훈련 평가

- 가.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연습·훈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,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·보완하여야 한다.
 - 1) 비상대응 연습·훈련 목표의 적정성
 - 2) 비상대응계획 및 현장조치매뉴얼의 적합성
 - 3)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대책의 적정성
 - 4) 비상대응 직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
 - 5)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
 - 6) 비상대응 연습·훈련 지휘체계의 적정성
- 나.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연습·훈련 및 평가에 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, 전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9. 비상대응 연습·훈련 참관 등

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 연습・훈련에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유관기관(교통안전공단

포함)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, 비상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의견, 연습·훈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.

10. 사이버테러 대응계획

철도운영자등은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선로제어설비, 철도신호제어설비, 송변전설비, 전철전력설비, 통신설비 등 철도운전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을 수립,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,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가. 사이버테러 대책의 수립·이행 및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책임과 권한이 부여 된 책임자 지정
- 나.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
- 다.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, 컴퓨터 또는 통신 등의 구성요소에 대한 식별
- 라. 사이버테러의 예방·탐지·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
- 마. 사이버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바.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
- 사. 주기적 취약점 분석 ·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

11. 사이버테러 보완대책

철도운영자등은 철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 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보안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가. 안전한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방안 (유·무선 포함)
- 나. 철도 네트워크 연계구간 보호대책
- 다. 안전한 철도 감시정보 수집 및 제어 보안대책
- 라. 철도시스템(PC. 서버 등) 보안대책
- 마. 철도 응용프로그램 보안대책
- 바. 철도 제어기기 보안대책
- 사. 제어시스템 패치/백신 업데이트 대책
- 아.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보안관리 대책
- 자. 유지보수 인력 보안관리 대책